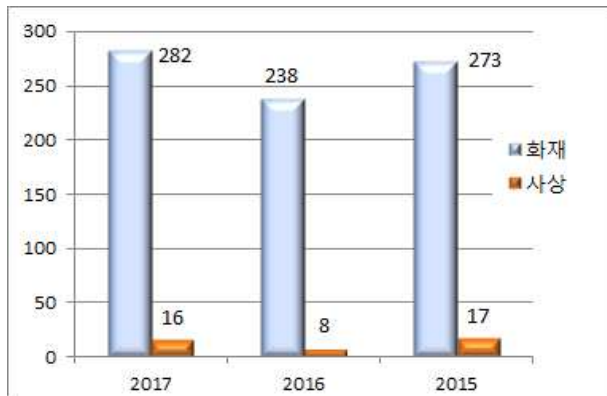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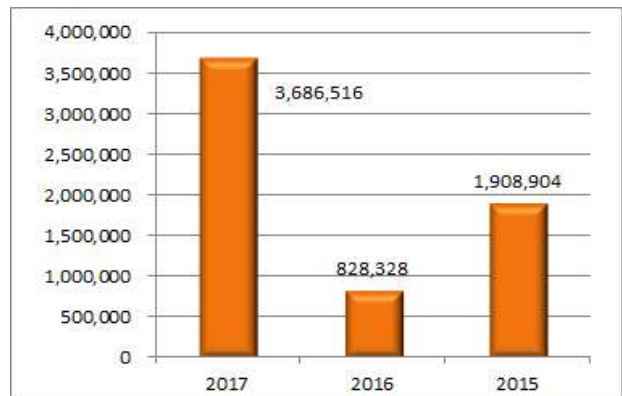
8월 주요 안전사고 예보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소방활동 분석

□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출동현황



《발생 건수/사상자》



《피해액/ 천원》

- 최근 3년간('15 ~ '17)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793건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423,748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6월~8월에 발생한 차량화재가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 '15년 273건(사망2, 부상15), '15년 238건(사망3,부상5), '16년 282건(사망3, 부상13)

□ 최근 3년간 차종별 화재현황

구분	계	승용차	화물차	버스	승합차	특수차	오토바이	농기계	건설기계	기타
계	793	344	256	19	47	20	17	30	49	11
비율	100%	43.4%	32.3%	2.4%	5.9%	2.5%	2.1%	3.8%	6.2%	1.4%
2017년	282	125	82	6	17	11	6	12	17	6
2016년	238	98	84	5	15	3	4	8	18	3
2015년	273	121	90	8	15	6	7	10	1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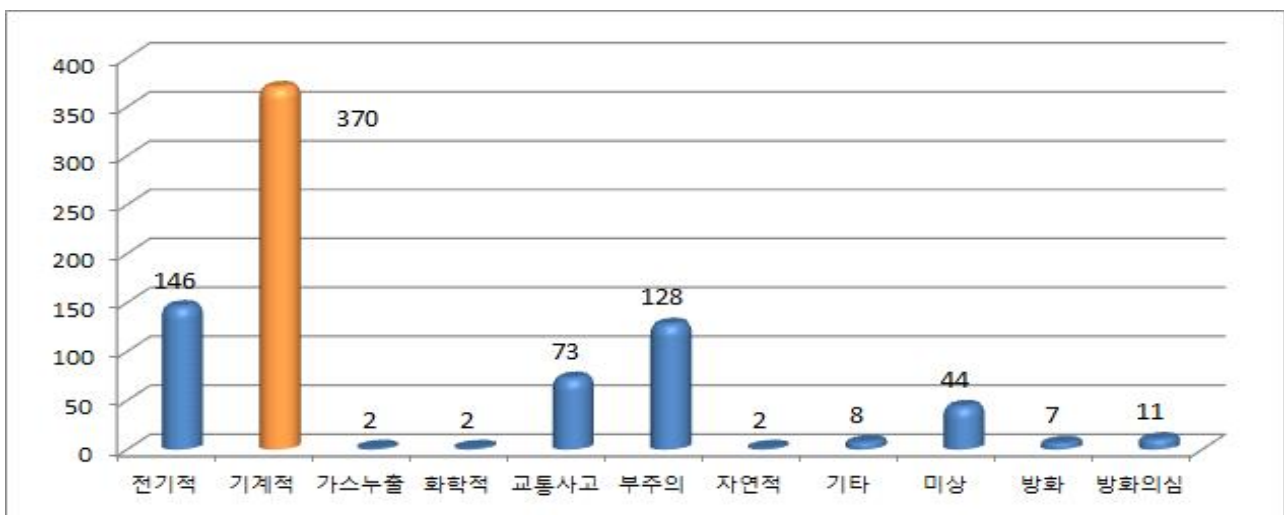
-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량이 전체의 43.4% 344건, 화물차량 32.3% 256건, 굴삭기 등 건설기계 49건, 승합차량 47건, 경운기 등 농기계 30건, 특수자동차 20건, 버스 19건, 오토바이 17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현황

구분	계	일반도로	주차장	공지	고속도로	터널	기타도로
계	793	375	103	124	146	9	36
2017년	282	141	31	51	48	4	7
2016년	238	106	32	32	51	2	15
2015년	273	128	40	41	47	3	14

- 화재발생 장소별로 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467.3%(375건), 고속도로 146건(18.4%), 공지 124건, 주차장 103건, 터널 9건, 기타도로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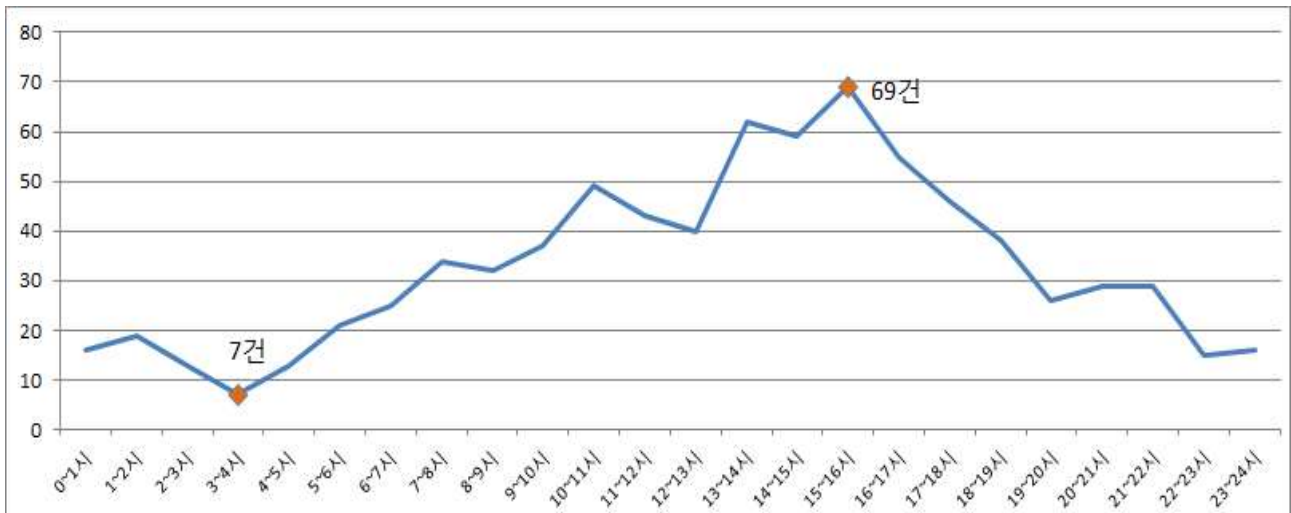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원인별 화재현황



- 원인별로 보면 기계적 요인이 가장 많은 370건(46.7%), 전기적 요인 146건(18.4%), 부주의 128건, 교통사고 73건, 방화(의심)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요인중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로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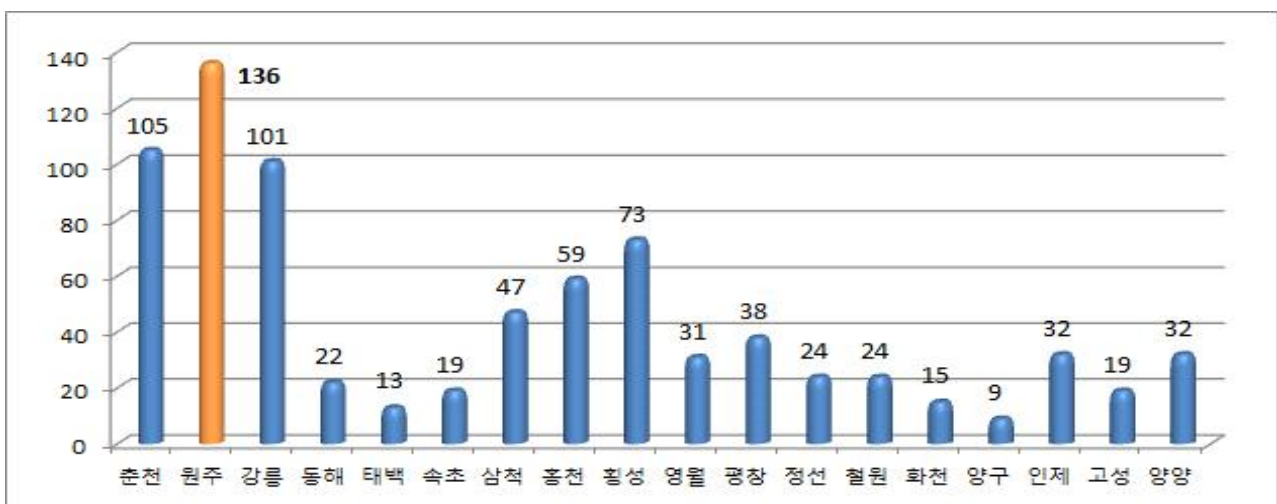
과열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일 누설 70건, 노후 16건, 정비 불량 14건, 자동제어 실패 6건, 역화 2건 등이었다.

□ 최근 3년간 시간대별 화재현황



- 차량화재는 하루중 온도가 가장 높은 낮 3~4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새벽 3~4시 사이에는 가장 적었다.
여름철 휴가 등으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 할 경우 낮 시간대에는 차량 엔진의 열을 식혀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현황



-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136으로 17%를 차지하고, 춘천시 105건, 강릉시 101건이며, 군 지역에서는 횡성군 73건, 홍천군 59건, 평창군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예방 요령

□ 차량 사전 점검은 필수!

1. 실내 및 엔진룸에서 연료냄새가 나는지 엔진룸을 열어 연료라인 계통 확인
2. 오일은 기계장치 윤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냉각에도 영향을 주어 순환하면서 각종 장치의 발열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오래된 오일은 교환하고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여야 함
3. 엔진룸에 있는 각종 배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
4. 무더위 에어컨 장치 역시 배터리에 무리를 주게 되며, 배터리 연결선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가동을 피하고 수시로 차량을 쉬게 함
5. 냉각수를 수시 보충하고 엔진룸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청결유지

□ 주행중 안전수칙

1. 주행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꽂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에 의해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
2. 폭발위험이 있는 차내에 라이타나 배터리, 스프레이 등을 두지 않는다.
3.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 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5. 주행중 차량온도계의 지침이 올라가거나, 보닛 안쪽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거나 차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끄고 점검한다.
6. 차에 불이 붙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엔진을 끄고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되, 최초진압에 실패하면 최소 30미터 거리를 두고 신고한다.